

## 소송사무처리에 관한 운영세칙

제정	2007.12.24	개정	2025.03.17
개정	2011.08.16		
개정	2014.01.21		
개정	2017.04.11		
개정	2019.06.25		
개정	2020.03.18		
개정	2022.06.30		
개정	2023.03.15		
개정	2023.03.15		
개정	2024.03.13		

### 제1장 총 칙

**제1조(목적)** 이 세칙은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(이하 “재단”이라 한다)을 당사자로 하는 민.형사관련 소송 전반에 대한 피소 또는 제소의 경우에 원활한 소송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소송사건중의 승소사건 및 상대방의 소 취하로 인하여 승소로 간주된 사건에 대하여 지출된 소송비용의 원활한 회수와 고문변호사 운영 및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14.1.21., 2025.3.17.>

**제2조(소장접수 및 피소보고)** ①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송달받은 해당부서(이하 “소송담당부서”라 한다)는 즉시 문서접수부에 등재한 후에 그 소장을 법무담당부서(이하 “소송총괄부서”라 한다)에 인계하여야 한다.  
② 소송총괄부서의 장은 소장을 인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청구내용을 검토한 후에 소장부본을 소송담당부서로 송부하여 적극 응소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.

**제3조(소송수행자.소송대리인의 지정)** ① 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대리인(이하“소송수행자”라 한다.)은 소송총괄부서의 장이 매 건마다 소송해당부서의 장을 포함하여 직원 1명을 지정하되, 사안에 따라 달리 지정할 수 있다.  
② 민.형사 관련 소송을 직원이 직접 수행할 경우에는 “별지 제1호서식”에 의한 소송대리인 허가신청 및 소송위임장을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제출하여 소송대리인 허가를 받는다.

**제3조의2(변호사의 선임)** ① 재단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대한 변호사의 선임기준은 “별표 1” 과 같다. <개정 2014.1.21., 2025.3.17.>  
② 변호사는 공개모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법률유관단체 또는 법률전문가 등의 추천을 받아 위촉할 수 있다. 단, 소송수행 없이 순수 자문활동만 하는 법률고문이나 특정사건에 대한 일회성 소송을 위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. <신설 2019.6.25.>  
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변호사 위촉 및 재위촉을 제한할 수 있다. <신설 2019.6.25.>  
1. 법률자문실적 저조를 포함하여 소송수행능력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 실적이 저조한 경우

2. 비위행위자인 경우
3. 퇴직공직자에 대한 소송 몰아주기로 판단되는 경우
4. 법률고문변호사 및 소송수행변호사간에 이해충돌방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

[본조신설 2011.8.16.]

**제4조(소제기)** ① 소송관련부서는 제소요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소송총괄부서의 협의를 거쳐 제소방침을 수립하여야 한다.

② 소송관련부서에서 소를 제기하는 때에는 각종 증빙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고문변호사 등 전문가의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.

**제5조(소송수행자의 의무)** ① 소송수행자가 사전 내부방침에 의하여 고문변호사와 협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11.8.16>

1. 반소, 소의 취하, 화해.조정, 청구의 포기.인락 의한 소송탈퇴
  2. 항소.상고의 제기와 포기 또는 그 취하, 민사소송법 제390조 제1항의 단서 및 제395조의 규정에 의한 항소 또는 상고를 하지 아니할 취지의 합의
  3. 신청사건의 결정시에 인용된 사건에 대한 즉시항고의 여부 또는 기각된 사건에 대한 결정문
  4. 가압류 및 가처분의 신청
  5. 청구내용의 변경과 확장
  6. 상대방의 소취하에 대한 동의
  7. 당사자 쌍방2회 불출석시 기일지정신청
-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문변호사의 협의를 받을 때에는 “별지 제2호 서식”에 의하고, 방침은 소송개요 또는 배경, 청구취지, 청구사유 및 상대방의 청구사유, 소송부서 또는 소송수행자의 상대방 청구사유에 관한 반박 및 의견, 문제점 및 대책을 포함하여야 한다.
- ③ 소송수행자는 중요한 사항, 의문이 있는 사항 등 모든 소송행위를 함에 있어 소송총괄부서에 보고하고, 지도를 받아야한다.
- ④ 소송수행자는 판결이 선고되면 불변기일(재단에 판결문이 송달된 날부터 14일 또는 변호사에게 송달된 날부터 14일을 말한다.)이내에 항소 여부를 결정하고, 불변기일 3일전까지 소송총괄부서에 보고하여 지도를 받아야 한다.

## 제2장 고문변호사 운영

**제6조(변호사의 선임)** 삭제 <2011.8.16>

**제7조(위촉 및 해촉)** ① 대표이사는 개업중인 변호사 중에서 2인 이내의 고문 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. <개정 2017.4.11.>

②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<개정 2019.6.11., 2019.6.25.>

③ 대표이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될 때에는 고문변호사를 해촉 할 수 있다. <개정 2017.4.11.>

1.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을 때
2. 정당한 사유 없이 소송수행을 기피할 때
3. 재단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
4. 다음의 사유로 재단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하였을 때

- 가. 불변기일 도과
- 나. 소송당사자와 담합
- 다. 고문에 불성실하거나 무성의한 소송수행
- 라. 법률고문으로 품위를 손상시키는 사례가 있을 때

**제8조(고문사항)**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대표이사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. <개정 2017.4.11.>

1. 재단이 당사자가 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
2. 각종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
3. 기타 법령해석 및 대표이사가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**제9조(소송비용 등)** ① 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사건에 관한 비용은 “별표2”의 기본에 의하여 각 심급 단위 별로 지급한다.

② 고문변호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월 300,000원 이내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 <개정 2017.4.11.>

**제10조(사건실적부 비치)** 대표이사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문을 의뢰 사항에 대해서는 “별지 제3호서식”에 의한 사건 실적부를 비치하고 월별로 정리하여야 한다. <개정 2017.4.11.>

### 제3장 소송수행

**제11조(본안소송수행)** ① 소송수행자는 소송총괄부서의 지도에 따라 본안에 대한 변론을 준비하기 위하여 관계서류를 조사하고, 사실관계를 파악하며 입증자료를 수집하여야 한다.

② 본안소송과 관련하여 동일 소송절차에서 일거에 해결하여야 할 또 다른 분쟁의 존부, 소송참가를 할 수 있는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의 존부, 채권보전 및 잠정조치의 필요성 등을 적극 검토하여 반소제기, 소송고지, 가압류 신청, 가처분신청 등을 적극 검토한다.

③ 답변서를 작성함에 있어 소송수행자는 본안 소송전에 항변사유가 있는지의 여부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.

④ 상대방의 주장사실 중에서 다툼이 없는 사실에 대하여는 인정하고, 쟁점에 대하여는 반박자료 및 법령의 적용에 대한 설명을 증거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.

⑤ 공동수행사건의 경우에는 소송기일을 고려하여 적시에 고문변호사와 협의를 거쳐 공동명의로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한다.

⑥ 답변서 등을 법원에 제출할 때에는 법원이 지정한 기간내에 제출하여 상대방에게 도달될 수 있도록 하며, 제출부수는 상대방수에 법원제출용을 더한 수로 한다.

**제11조의2(상고심의 소송수행)** ① 소송수행자는 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 사유가 있을 때에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불변 기간내에 상고장을 원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상고에 있어 대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 접수통지서가 송달되면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작성하여 대법원에 제출하고, 상대방이 답변서를 제출하면 종료 후 필요에 따라 보충 상고이유서를 제출한다.

③ 상고심에 대한 소송수행자지정에 대하여는 원심의 소송수행절차를 준용한다.

④ 원고가 패소판결에 불복하여 상고를 한 때에는 원고의 상고 이유서를 송달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[본존신설 2011.8.16]

**제12조(소송종결시의 조치)** ① 소송수행자는 승소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.

<개정 2022.6.30.>

1. 이행판결 등에 있어 승소판결시의 판결주문에 의한 강제집행을 검토 할 것
  2. 판결확정으로 상대방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된 때에는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을 승소판결이 최종확정된날로부터 30일 내에 신청하고, 이후 결정받은 금액을 근거로 소송비용을 회수할 것
- ② 패소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.
1. 패소판결의 이유가 제도적 결함에 기인된 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그 시정 및 보완 등 필요한 사항을 조치할 것
  2. 패소원인을 규명하여 원처분시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를 발생하게 한 행위자에 대하여는 징계처분요구 또는 구상권의 행사 등을 검토 할 것
  3. 금전급부판결로서 패소가 확정되었거나 가집행선고부 패소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가집행금에 대한 지급을 검토할 것
  4. 변제시에 소송관련부서는 소송총괄부서의 사전심사를 받아 회계별로 처리하여야 하며, 청구서·판결문정본·판결확정증명원·인감증명서·위임장·대리인 인감증명서 등의 필요한 서류를 징구할 것

#### 제4장 소송비용의 회수

**제13조(소송비용의 회수대상)** 소송비용의 회수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승소 또는 상대방의 소취하로 승소간주 종결된 신청사건 및 민.형사소송
2. 승소 또는 상대방의 소취하로 승소간주 종결된 사건중 소송비용의 채권 소멸시효가 만료되지 아니한 사건

**제14조(업무구분)** ① 소송비용회수업무는 총괄심사부서와 비용회수부서로 구분하되, 총괄심사부서는 경영본부가 되고 비용회수부서는 당해 소송을 담당할 부서가 된다. <개정 2020.3.18., 2023.3.15.>

② 총괄심사부서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비용회수부서에 대한 소송비용회수업무의 지도
2. 소송비용회수예정액의 산정에 대한 적정여부의 심사

③ 비용회수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승소사건 또는 상대방의 소취하로 법원의 승소간주 확정결정이 있는 사건에 대하여는 총괄심사부서의 사전심사 후에 “별지 제4호서식”에 의한 사건 관할 1심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신청할 것
2. 법원의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징수결정 할 것
3. 채무자가 고지기간내에 소송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에 의하여 이를 회수 할 것
4. 승소가 확실히 예상되는 소송사건이나 승소가 확정된 소송사건에 대하여는 재산가압류 등의 사전조치로 채권을 확보하고, 채무자의 주거지를 항상 파악하여 정리할 것
5. 채무자가 소송비용의 변제능력이 없을 때에는 변제받을 때까지 채무자의 재산증식이나 소득원이 발생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 회수할 것

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,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아 예외적으로 미회수 가능하다. <신설 2022.6.30.>

1. 상대방이 법률의 착오 또는 법률의 무지로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지정한 경우
2. 상대방에게 경제적 자력이 없는 경우(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, 채무자 회생 및 파산·면책 등 경제적 어려움 소명이 가능한 객관적 자료 제출 경우로 한정)
3. 소송비용 회수에 소요되는 비용 보다 회수해야할 비용이 적은 경우

4. 상대방이 사망, 실종, 행방불명 등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
5. 공익소송 등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고 인정하여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은 경우 단, 이 경우는 별도의 위원회 구성(외부인 포함) 및 사전 의결이 필요하며, 소송비용 회수 착수 처리기한은 달리 정할 수 있다.

**제15조(소송비용계산서의 작성요령)** ① 소가기준에 있어 금전청구의 사건은 청구금액을, 부동산소유권이전청구 등은 소가증명에 의한 금액을 소송물가액으로 하되,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을 준용한다.  
 ② 소송비용은 실제로 지출 또는 사용된 금액으로 한다.  
 ③ 소명자료에는 영수증·산출근거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.

**제16조(결과통보)** 비용회수부서는 채무자로부터 소송비용을 회수한 때에는 영수필통지서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총괄심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.

**제17조(장부비치)** 소송총괄부서 및 소송비용총괄심사부서에 비치하는 장부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소송사건처리부(“별지 제5호서식”)
2. 신청사건등처리부(“별지 제6호서식”)
3. 소송비용 지출대장(“별지 제7호서식”)
4. 신청사건비용등 지출대장(“별지 제8호서식”)
5. 소송비용회수 및 미회수대장(“별지 제9호서식”)

### 제5장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

**제18조(포상금 지급 대상자)**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판결문에 소송 수행자로 표시된 직원. 다만,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 수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. <개정 2017.4.11.>

1. 재단이 원고인 경우 : 원고의 청구 내용의 70% 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
  2. 재단 또는 대표이사가 원고인 경우 :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% 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
- ② 제1항 각호의 해당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당해 사건수행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담당자와 소송 사무취급 직원

**제19조(공동소송 수행자에 대한 지급)**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1인이 수행한 것으로 보고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을 균등 분배한다.

**제20조(포상금 지급기준)** ① 재단 또는 대표이사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제18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한다. <개정 2014.1.21., 2017.4.11., 2025.3.17.>

- ② 제1항의 판결은 심급별로 판단 결정한다. 다만, 상소된 경우에는 원심판결 내용과의 대비로서 결정한다.
- ③ 포상금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 한다.
  1. 소취하(쌍방 취하 포함)된 경우
  2. 파기 환송이 되었으나 제18조제1항의 기준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판결인 경우

**제21조(포상금 지급액)** 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급할 수 있다.

1. 민.형사소송(본안) 1인당 300,000원 이내, 소액사건심판법에 의한 소액사건의 경우 1인당 100,000원 이내

2. 신청사건(민.형사소송) 1인당 50,000원 이내

② 본안 소송에 있어서의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6배까지 범위내에서 특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, 포상금액은 대표이사가 결정한다. <개정 2017.4.11.>

**제22조(정보공개)** 대표이사는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과 그 밖에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. 단, 이 경우 변호사에게 정보공개 동의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.

1. 변호사 위촉 현황
2. 재단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의 위임현황
- 3 그 밖에 대표이사가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관한 사항 [본조신설 2019.6.25.]

**부칙(2007.12.24)**

**제1조(시행일)** 이 세칙은 발령한 날로부터 적용한다.

**제2조(경과조치)** 이 세칙은 시행이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세칙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.

**부칙(2011. 8.16)**

이 세칙은 발령한 날로부터 적용한다.

**부칙(2014.1.21)**

이 세칙은 발령한 날로부터 적용한다.

**부칙(2017.4.11)**

이 세칙은 발령한 날로부터 적용한다.

**부칙(2019.6.25.)**

이 세칙은 발령한 날로부터 적용한다.

**부칙(2020.3.18.)**

이 세칙은 발령한 날로부터 적용한다.

**부칙(2022.6.30.)**

이 세칙은 발령한 날로부터 적용한다.

**부칙(2023.3.15.)**

이 세칙은 발령한 날로부터 적용한다.

**부칙(2024.3.13.)**

이 세칙은 발령한 날로부터 적용한다.

**부칙(2025.3.17.)**

이 세칙은 발령한 날로부터 적용한다.

[별표1] <개정 2011.8.16>

### 사 건 별 변 호 사 의 선 임 기 준

구 분	심 급 별	소 송 수 행 자	근 거
민.형사 소송	1심중 단독판사가 재판하는 경우 (가소.가단)	.원칙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한다.	민사소송법 제 82조
	1심중 합의부사건 및 2심.3심	.변호사를 선임한다.	

[별표2] <개정 2017.4.11., 2017.4.11., 2025.3.17.>

### 소 송 비 용 지 급 기 준

소송별 구분	지 급 기 준			소송비용청구시 구 비 서 류
	내 용	착 수 금	승소사례금	
민 · 형 사 소 송	1. 신청사건	본안사건 착수금의 100분의 50범위내	좌 동	· 청구서
	2. 본안사건 · 소송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· 소송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(소송 물가액 기준)	· 650,000원 이내 · 변호사보수의 소송 비용산입에관한규칙 (대법원규칙)이 정하는 금액	· 완전승소는 착수금의 100분의 150 · 60퍼센트 이상 승소할 경우 착수금에 승소비율을 곱한금액 · 화해의 성립인락, 소취하(상불취하포함) 경우 착수금의 100분의 50 (단, 조건부 취하는 제외)	· 청구서 · 소가증명원 · 사건확정증명원 · 소취하서 중 해당서류
	3. 환송심	· 본안사건착수금의 100분의 50범위내	상 동	상 동
기 타 소 송 비 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인지대 : 실액</li> <li>· 송달액 : 실액</li> <li>· 검증비 : 실액</li> <li>· 감정료 : 실액</li> <li>· 출장비 및 여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재단 여비규정 준용</li> </ul> </li> <li>· 기타비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실액(단, 검증비, 감정비, 소송대리인 수행시 30,000원을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)</li> </ul> </li> </ul>	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청구서</li> <li>· 인지도증명서</li> <li>· 검증비, 감정료등 납부명령사본 각 1부</li> </ul>

[별지 제1호 서식] <개정 2014.1.21., 2017.4.11., 2024.3.13., 2025.3.17.>

## 소송대리허가신청 및 소송위임장

사건번호 및 사건명 : 2006나 ○ ○ ○ ○ 건물 등 철거

당 사 자 신 청 인 : ○ ○ ○

피신청인 :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

위 사건에 관하여 피신청인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은 아래와 같이 소송대리허가신청 및 위임을 합니다

### 1. 소송대리허가신청

○ 소송대리할 사람

소 속	직 위	직 급	성 명	비 고
○○○○				

○ 소송대리허가를 신청하는 이유 : 위 사건과 관계된 업무 수행자

○ 첨부서류 : 재직증명서 각1부

### 2. 소송위임할 사항

가. 일체의 소송행위, 반소의 제기 및 응소

나. 재판상 및 재판외의 화해

다. 소의 취하

라. 청구의 포기 및 인락

마. 복대리인의 선임

바. 목적물의 수령

사. 공탁물의 납부, 공탁물 및 이자의 반환청구와 수령

아. 담보권행사, 최고신청, 담보취소신청, 동 신청에 대한 동의, 담보취소결정 정본의 수령, 동 취소 결정에 대한 항고권의 포기

자. 기타

○○○○년 ○월 ○일

위 신청인 및 위임인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

대표이사 ○ ○ ○

○○○○ 지원 귀중



[별지 제3호 서식]

사 건 실 적 부

구분 종류	사건명	의 퇴 년월일	의 퇴 내 용	회 신 년월일	회 신 내 용	비 고
소송사건						
이의신청						
법령해석						
기 타						

[별지 제4호 서식] <개정 2014.1.21., 2017.4.11., 2025.3.17.>

## 소 송 비 용 액 확 정 결 정 신 청

신 청 인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  
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332(하대원동)  
대표이사 ○ ○ ○

피신청인 ○ ○ ○(123456-1234567)  
성남시 ○○구 ○○○로 ○○(○○○)

위 당사자간 귀원 2006가소○○○○, 항소심 2006나○○○○ 임금 사건에 관하여  
○○○○년 ○월 ○일 항소심 판결선고가 있었고, 신청인이 승소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이 부담  
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의 확정을 구하기 위하여 별지 비용계산서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.

### 첨 부 서 류

- |             |    |
|-------------|----|
| 1. 소송비용계산서  | 1통 |
| 2. 비용지출관련서류 | 1통 |
| 3. 판결문 사본   | 1통 |
| 4. 위임장      | 1통 |

○○○○년 ○월 ○일

신청인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

대 표 자 대표이사 ○ ○ ○

위담당자 ○ ○ ○

(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 ○○국 ○○담당자 ○○○-○○○○)

○ ○ 법원 귀중

[별지 제5호 서식]

## 소 송 사 건 처 리 부

일련 번호	사건명 (청구액)	원고	피고	제. 피소일	수행부서 및 수행자	1 심		2 심		3 심		종 결
						사건번호	선고일	사건번호	선고일	사건번호	선고일	
						변호사	결과	변호사	결과	변호사	결과	

[별지 제6호 서식]

신 청 사 건 등 처 리 부

일련 번호	사건번호 및 사건명	본안사건 (관련사건)	신청인 채권자	피신청인 채무자	신청일	수행부서 및 수행자	처 리 내 역	비고

[별지 제7호 서식]

## 소 송 비 용 지 출 대 장

사건명	사건번호	원고	피고	소 송 물가액	제소 일자	지 출 내 역	비용부담 판 결	비고
						변호사비용, 인지, 송달료, 기타		

[별지 제8호 서식]

신 청 사 건 비 용 등 지 출 대 장

사건 번호	사건명	본안소송 (관련사건)	신청인	피신청인	신청 일자	지 출 내 역	비용부담 판 결	비고
						변호사비용, 인지, 송달료, 기타		

